

	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03.01
		최종개정일자	2022.01.01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본 대학"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지원, 강의 등을 담당하고 근무조건과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4조(절차) 본교 전임교원규정을 준용하여 임용한다.

제5조(유형 및 자격)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 산학중점교원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 교원으로 구분하며,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채용형 산학중점교원은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.

1. 연구소, 정부기관,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본 규정시행일 이전부터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중에서 선발하되, 산업체경력에 제한은 없으나 책임강의 시수를 30%이상 감면받고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지원 및 현장실습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말한다.

제6조(직위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특별채용 및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에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7조(임용 및 지정기간)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지정한다.

③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비정년제로 임용되며, 최초 임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재계약할 수 있다. 임용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.

④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며,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. 이후 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일반 전임교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8조(임용절차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(1차심사), 면접(2차심사)으로 한다.

제9조(서류심사)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채용분야 전공 또는 유사전공의 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서류심사는 [별표1, 별표2]에 의한다.

③ 서류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 초빙지원서 1부(본 대학의 소정양식)
2. 자기소개서 1부
3. 학력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)
4. 성적증명서 각 1부
5. 연구실적물 각 1부
6.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교육, 연구 및 일반경력 포함)각 1부
7. 자격증 사본 각 1부
8.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
9. 기타 필요서류

④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정하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. 다만, 3배수가 미달될 경우 전원 선발하거나 또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2차 면접대상자 선발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10조(면접심사) ① 면접평가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5명 내외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면접평가는 인성, 교수로서의 자질, 학과발전 방안 등을 "[별표4]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, 평가점수의 산출은 위원들의 평균점수로 한다.

제11조(특별채용) ①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단 특별채용 대상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2. 본교 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국가정책사업, 대학의 특성화 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따른 특별채용이 필요한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갖춘 자
4. 국내·외 첨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종사하였거나 외국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자
5.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
6. 공개 채용으로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, 초빙하지 못한 분야 중 해당학과가 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

② 특별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제12조(업적평가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·재임용·재계약·성과급 지급등 인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업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②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[별지서식5] 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성과평가에 의한 소속학과 학과장 또는 관련 산학협력처장 교원업적평가 점수(1,00점 만점) :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대상자 선발하여 임용 제청한다.

제13조(강의책임 시간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강의 기본시간은 주 6시간으로 한다.

다만, 대학행정,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4조(임용계약의 해지)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2.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
3. 신체 ·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4.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5. 산학협력중점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
6. 기타 임용계약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5조(복무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육관계법령,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본교 이외의 학교·기관 등에 출강 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타 기관의 촉탁 또는 위촉 시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보수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본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계약한다.

제17조(휴직)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 전임교원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규정 경과조치) 이규정 시행과 동시에 산학취업처에서 2013년 3월 1일 최종 개정되어 시행해 온 "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"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류 전형 심사표(산학협력중점교원)

지원학과 :

전공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항 목	심 사 점 수	비 고
서류 심사	교수 자격 기준	총족(), 미총족() - 사립학교법 및 본 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-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
	세부 자격 기준	총족(), 미총족() -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-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
	제출 서류 여부	제출(), 미제출() - 교원초빙지원서, 자기소개서, 경력사항 기재목록, 자격사항 기재목록, 졸업 및 성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
	※ 지원자격과 자격기준 미달자,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	
지원 분야 일치 여부	일치(), 불일치()	※ 불일치 자는 불합격 처리함 (지원분야 심사위원 2/3이상 불일치 판정시 불일치)

20 년 월 일 확인 : 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2]

1차 전형 심사표 (산학협력중점교원)

지원학과 :

전공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항 목	배점	심 사 점 수					비 고																
		A	B	C	D	E																	
학력	20	20	15	10			<input type="checkbox"/> A(박사) / B(석사) / C(학사)																
성적	10	10	8	6			<input type="checkbox"/> A(4.0이상) / B(3.5이상~4.0미만) / C(3.0이상~3.5미만)																
산업체경력 또는 교육경력	40	40	35	30	25	2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기준</th> <th>등급</th> <th>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</td> <td>20년 이상</td> <td>D</td> <td>13년이상~15년미만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17년이상~20년미만</td> <td>E</td> <td>10년이상~13년미만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15년이상~17년미만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초빙분야에 부합되는 경력만 인정</p>	등급	기준	등급	기준	A	20년 이상	D	13년이상~15년미만	B	17년이상~20년미만	E	10년이상~13년미만	C	15년이상~17년미만		
등급	기준	등급	기준																				
A	20년 이상	D	13년이상~15년미만																				
B	17년이상~20년미만	E	10년이상~13년미만																				
C	15년이상~17년미만																						
산학협력 업무 계획서	20	20	15	10	5		<input type="checkbox"/> A(최우수) / B(우수) / C(보통) / D(미흡)																
자격증	10	10	8	6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점수 합산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기준</th> <th>등급</th> <th>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</td> <td>3점 이상</td> <td>C</td> <td>1점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2점</td> <td>D</td> <td>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기술사(3점) / 기능장(2점) / (산업)기사(1점) ※ 기타 자격증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함</p>	등급	기준	등급	기준	A	3점 이상	C	1점	B	2점	D	0점				
등급	기준	등급	기준																				
A	3점 이상	C	1점																				
B	2점	D	0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100																						

20 년 월 일

확인 :

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3]

산학협력 업무계획서

지원학과 :

전공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구분	역할	추진실적 및 추진계획
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	실무적용강의	
	산학협력형 교과개편	
	기술이전 및 사업화	
산학협력 정책	산학협력 업무기획 및 추진	
	지역네트워크	
취업 및 창업 지원	취업연계	
	기업네트워크 구축	
	현장기술지도	
	기업가정신 및 창업동아리지원	
특이 역할	기타	

- ※ 특이역할 란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가능
- ※ 추진실적을 기술할 경우 반드시 이것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만 내용사실 인정
- ※ 산학협력 업무계획서의 양식은 위의 구분과 역할의 제목을 분리해서 기술한다면 위의 표양식이 아닌 양식으로 포맷을 변형해서 작성해도 무방하며 전체 계획서의 양은 A4 2~3페이지 이내로 기술

[별표 4]

면접 평가표

지원학과 :

전공분야 :

지원자 성명 :

평가 내용		배 점	평가 점 수 (배 점 100 점)				비고
항 목	평가 항목		우수 (21~25)	양호 (16~20)	보통 (11~15)	미흡 (10점이하)	
인성	기본 태도 가치관 인성	25					
교수자질 전문성	교육관 학생지도관 창의성	25					
산학협력 주요추진 실적	인사행정수행 경력 프로젝트수행 경력 기타교육경력	25					
대학발전 기여 가능성	대학발전방안 학과발전방안	25					
소 계 (100 점)							합 계

20 년 월 일

평가자 :

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5]

산학협력중점교원 재임용 성과평가

평가대상자	소속	직급	성명

구분 평가요소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	평점				평가
			우수 (18-20)	양호 (15-17)	보통 (10-14)	미흡 (9점이하)	
1.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	교육자로서의 인성과, 가치관 품위, 교직원 인화 관계	20					
2. 대학발전, 학과발전에 대한 기여도	대학발전, 학과발전을 위한 노력 및 주인의식	20					
3. 산학협력 주요 추진실적	산학협력 업무기획 및 추진	20					
4. 교수능력과 학생지도 실적	- 교수열의와 수업실태, 교육효과 (학생반응), 학습자료개발 및 활 용, 학습방법 개선 등 실적 -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와 자세	20					
5. 근무상황	근무자세, 상벌사항, 기타 근무에 따른 성실성	20					
총점		100					

※ 평가방법
 1.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(우수), (양호), (보통), (미흡), 으로 평정한다.
 2. 위원 개인별로 평가표를 작성하고 합계 점수를 평점평균한 것을 평점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평가자 : (인)

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